정 정 신 고 (보고)

2026년 11월 13일

1. 정정대상 공시서류 : 집합투자규약
- 삼성클래식KOSPI200인덱스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 제1호[주식]

2.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: 2009.04.17

3. 정정 사유
- 투자신탁 명칭 변경(삼성클래식인덱스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 제1호[주식] → 삼성클래식KOSPI200인덱스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 제1호[주식])
-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

4.정정요구·명령관련 여부: 아니오

5. 정정사항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투자신탁 명칭	삼성클래식인덱스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 제1호[주식]	삼성클래식KOSPI200인덱스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 제1호[주식
제3조 (정의)	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4. “ 투자신탁”이라 함은 삼성클래식(추 가)인덱스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 제1호[주식]를 말한다. 5. “ 전환”이라 함은 수익자의 요청으로 판매회사가__말한다. 다만, 판매사의 사정에 따라 일부전환은 제한될 수 있다.	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4. “ 투자신탁”이라 함은 삼성클래식KOSPI200인덱스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 제1호[주식]를 말한다. 5. “ 전환”이라 함은 수익자의 요청으로 판매회사가__말한다. 다만, 판매사의 사정에 따라 일부전환은 제한될 수 있다.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	나. 삼성 클래식**(추 가)**인덱스연금 증권전환형투자신탁 제1호[주식]	나. 삼성 클래식**KOSPI200**인덱스 연금 증권전환형투자신탁 제1호[주식]
제7조(집합투자업자 등의 책임)	**집합투자업자·신탁업자·판매회사가 법령·신탁계약·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**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,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.	**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, 판매회사,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(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를 말한다) 및 채권평가회사(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)가 법령,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**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,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.
제8조 (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권의 총 좌수)	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금( )원으로 하고, 설정할 수 있는 **(추 가)** 수익권(법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신탁의 수익권, 이하 " 수익증권" 이라 한다)의 총 좌수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.	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금( )원으로 하고, 설정할 수 있는 **수종의** 수익권(법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신탁의 수익권, 이하 " 수익증권" 이라 한다)의 총 좌수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.
제21조 (환매청구 및 방법 등)	**⑤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전자등록기관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전자등록기관은 지체없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.**	**(삭 제)**
제 36조(투자대상 등)	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__ 운용한다. 1. **법 제4조제4항에서 정하는 지분증권인 주권,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,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(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)(이하 " 주식" 이라 한다)**	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__ 운용한다. 1. **법 제4조제4항에서 정하는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(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)(이하 " 주식" 이라 한다)**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	②**채권의 신용등급이 제1항제2호에서 정한**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**채권**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**해당 채권**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.	②**제1항에서 정한**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**해당 자산**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**해당 자산**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.
제37조 (투자 한도)	①집합투자업자는__투자·운용한다. **(추 가)** ②제1항제1호 내지 **제6호의** 규정에 불구하고__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 5.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항제1호 내지 **제6호**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	①집합투자업자는__투자·운용한다. **5.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하로 한다.** ②제1항제1호 내지 **제7호의** 규정에 불구하고__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 5.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항제1호 내지 **제7호**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
제38조 (운용 제한)	①집합투자업자는__그러하지 아니하다. 2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__투자할 수 있다. 가. 국채증권,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,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, **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6호나목에 의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** 나.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**정부**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제외)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**(기업어음증권 및 금융기관이 할인·매매·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)**, 법 시행령 제7	①집합투자업자는__그러하지 아니하다. 2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__투자할 수 있다. 가. 국채증권,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,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**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** 나.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**국가**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)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**(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·매매·**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	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**(이하 이 목에서 “ 금융기관” 이라 한다)**이 발행한 어음 또는 **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은행·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·증권금융회사·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**,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(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) 또는 어음,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 및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채권,**(추 가)**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**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),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**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	**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)**,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**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,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,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**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(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**한다)** 또는 어음,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 및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채권, **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,**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**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**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**말한다),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· 예탁하여 취득한 채권**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
	5.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**자산총액 100분의 10을**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	5.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**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**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
	9.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	**(삭 제)**
	10. (생 략)	**9.** (현행과 같음)
	②제37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37조제1항제7호 내지 제9호, 이 조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, 제6호 및 제8호 **및 제10호**	②제37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37조제1항제7호 내지 제9호, 이 조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, 제6호 및 제8호 **내지**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	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**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** ④제1항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**(추 가)**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제5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**운용할 수 있다.**	**제9호**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**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** ④제1항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**(해당 증권을 추가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)**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제7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행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**운용하여야 한다.**
제42조 (투자신탁의 해지)	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__보고하여야 한다. 5.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**(추 가)**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__경우는 제외 **③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판매회사에 통지하거나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.**	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__보고하여야 한다. 5.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**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**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__경우는 제외 **③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향후 처리 계획(해지, 합병, 모자형 전환, 존속 등)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.** **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판매회사에 통지하거나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.**
부칙	**(신 설)**	**제1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다.(투자신탁 명칭 변경(삼성클래식인덱스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 제1호[주식] → 삼성클래식KO**

항 목	정정전	정정후
		SPI200인덱스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 제1호[주식]),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)